

「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6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7조의 제목과 조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,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비가 필요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의 제목과 제목 외 부분 수정
 - 당 초: 제7조(컴퓨터 이용자 준수사항) 컴퓨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변 경: 제7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컴퓨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「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컴퓨터 이용자 준수 사항)”을 “(이용의 제한)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컴퓨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른 <u>별상 노동자</u>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근로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)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추진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) ----- ----- ----- <u>예산</u> ----- ----- <u>의 범위에서 추진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</u></p> <p>5. <u>이동노동자 급식 지원</u></p>	<p>제5조(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신 설>

4. (생 략)

제6조(이동노동자 쉽
터 설치·운영) ①
시장은 이동노동자
의 노동환경개선 및
복리증진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기능
을 수행하는 이동노
동자 쉽터를 설치·
운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6. 이동노동자의 산
업재해 등 예방을
위한 안전교육 및
물품 지원

7. (현행 제4호와
같음)

제6조(이동노동자 쉽
터 설치·운영) ①

----- 쉽터(이
하 “쉽터”라 한
다)-----.

1. ~ 4. (현행과
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
음)

제7조(쉽터 이용자 준
수 사항) 쉽터 이용
자는 다음 각 호의
행위를 하여서는 안
된다.

1. 쉽터의 시설물
훼손하는 행위

6. (개정안과 같음)

7.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이동노동자 쉽
터 설치·운영) (개
정안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
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
음)

제7조(이용의 제한)
시장은 쉽터 이용자
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
행위를 하는 경우에
는 이용을 제한할
수 있다.

제7조(위탁 및 재정지원) <신 설>

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2.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3. 도박, 음주, 흡연 행위
- 4.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
제8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